# 「교육혁신원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7.) → 2021. 9. 13. 개정 판 (시행 2021. 7. 30.)

바뀜 10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324/compare?from=1289&to=1228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6:41:17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1조(목적)**<br>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.)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22-01-17〉 | **제1조(목적)**<br>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.)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| **제2조(사업)**<br>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〈개정 2018-01-17〉<br>1.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<br>2. 교수-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, 개발, 운영,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<br>3.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<br>4.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<br>5.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<br>6.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<br>7.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<br>8.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, 관리,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<br>9.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, 개발, 평가<br>10.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<br>[제목개정 2020.02.24.] | **제2조(사업)**<br>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〈개정 2018-01-17〉<br>1.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<br>2. 교수-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, 개발, 운영,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<br>3.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<br>4.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<br>5.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<br>6.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<br>7.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<br>8.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, 관리,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<br>9.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, 개발, 평가<br>10.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<br>[제목개정 2020.02.24.] |
| **제3조(조직)**<br>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.〈개정 2019-05-13〉<br>1. 교육혁신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.)<br>2.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<br>3. 〈삭제〉 2020.02.24<br>4. 교수학습개발센터<br>5.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<br>6. 〈삭제〉 2019.05.13<br>7. 원격교육지원센터<br>8. 〈삭제〉 2019.05.13.<br>9. 비교과통합센터 | **제3조(조직)**<br>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.〈개정 2018-20-19〉<br>1. 교육혁신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.)<br>2.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<br>3. 〈삭제〉 2020.02.24<br>4. 교수학습개발센터<br>5.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<br>6. 〈삭제〉 2019.05.13<br>7. 원격교육지원센터<br>8. 〈삭제〉 2019.05.13.<br>9. 비교과통합센터 |
| **제4조(원장)**<br>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,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〈개정 2018-01-17〉<br>[제목개정: 2022.01.17.] | **제4조(단장)**<br>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,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〈개정 2018-01-17〉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5조(조직운영)**<br>교육혁신원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,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.〈개정 2018-01-17〉 | **제5조(조직운영)**<br>교육혁신단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,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.〈개정 2018-01-17〉 |
| **제9조(외부자문위원)**<br>교육혁신원의 효율적인 운영, 연구개발,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〈개정 2022-01-17〉 | **제9조(외부자문위원)**<br>교육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, 연구개발,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|
| **제10조(사업보고)**<br>교육혁신원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-01-17〉 | **제10조(사업보고)**<br>교육혁신단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|
| **제11조(위원회)**<br>①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. 〈개정 2020-02-24〉<br>② 교육혁신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〈개정 2022-01-17〉 | **제11조(위원회)**<br>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 운영위원회를 둔다. 〈개정 2020-02-24〉<br>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|
| **제12조(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)**<br>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. 〈개정 2022-03-07〉<br>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총장(위원장), 교육혁신원장(서기), 교목처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글로컬사회혁신원장, 스미스학부대학장, 일자리본부장, 교육혁신원팀장,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8-01-17〉<br>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<br>④ 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 〈신설 2020-02-24〉<br>[제목개정 2020.02.24., 2022.01.17] | **제12조(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)**<br>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.<br>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으로 하고, 교육혁신단팀장(서기)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인성교육원장, 스미스학부대학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, 원격교육지원센터, 비교과통합센터장, 학생상담센터장, 일자리본부장,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8-01-17〉<br>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<br>④ 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 〈신설 2020-02-24〉<br>[제목개정 2020.02.24.] |
| **제14조(세칙)**<br>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〈개정 2020-02-24〉 | **제14조(세칙)**<br>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〈개정 2020-02-24〉 |